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65
----------	------

제안년월일 : 2016년 5월 2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일부 실·국이 신설 및 폐지되고 소관 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그 개편 내용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중 ‘일자리노동국’을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변경함(안 제33조제1항제3호).
- 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중 ‘마곡사업추진단’을 ‘지역발전본부’로 변경함(안 제33조제1항제8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3조제1항제8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지역발전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3호 다목 개정 규정은 2016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① (생략)	제33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① (현행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기획경제위원회 가.~나. (생략) <u>다. 일자리노동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라.~아. (생략)	3. 기획경제위원회 가.~나. (현행과 같음) <u>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라.~아. (현행과 같음)
4.~7. (생략)	4.~7. (현행과 같음)
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가.~라. (생략) <u>마. 마곡사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바. (생략)	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가.~라. (현행과 같음) <u>마. 지역발전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바. (현행과 같음)
9.~10. (생략)	9.~10. (현행과 같음)